今年엔 學會 補助金 1500萬원

學術 세미나도 支援키로

과학기술처에서는 과학기술의 창달 진흥을 위한 새로운 계획안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다.

1973년도 科學技術關係學會 육성이라는 題目下에 시달된 條文의 主要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학회학술활동을 造成하고 보조하기 위한 이 사업계획의 목적은 과학기술계 學會의 學術 硏究 의욕을 고취하고 學術교류 活動의 원활화를 도모하려함에 있다.

또한 적정규모 이상인 學會를 중점적으로 육성하여 유사학회를 간이통합하거나 혹은 모체가 되는 學會에의 흡수를 유도하여, 學問의 균형적인 發展을 유도하려는 것이 과학기술처의 육성방침안인 것이다.

이를 위한 보조대상 사업으로는

가. 학회지 발간

나. 학술발표회 개최

1) 세미나

2) 심포지움

3) 국제학술 발표회의 국내 개최

다. 국제학술교류 활동

1) 국제학술 단체 가입비

2) 국제학회 회비

등이 포함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기술관계 학회로서

가. 가입회원수가 소기의 학술활동을 전개하는데 적정규모 以上인 학회

나. 前年度의 學術活動 실적(학회지 발간, 학술 발표회의 개최, 國際學術 교류 活動 등)이 비교적 우량한 학회

다. 유사한 分野의 學會는 가급적 會員數가 가장 많거나 母體가 되는 學會를 지원한다.

라. 보조는 과학기술처 장관이 특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회별 事業別 소요 예산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특히 학술회의 개최에 따른 경비 지원은 년간 2회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중 1회는 73년 4월 科學技術週間 중에 週間行事의 일환으로 학술발표회의를 學會가 合同으로 개최토록 지원하고 잔여 1회는 해당학회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면 소요경비의 一部를 지원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보조금 교부 신청 기간은 1973년 3월 5일부터 20일까지이며 접수처는 학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동 261번지)이다.

여기에는 학회보조금 교부 신청서(서식1 서식2) 각1부와 학회 학술 활동보조금 교부 요령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외 자세한 사항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 문의하면 된다.

事業遂行을 爲해 定款改正

第8回定期總會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科總)는 2월 28일 오후 3時 體育會館에서 第8回 定期總會를 열고 아래와 같이 정관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本 改定案에 따르면 從前에는 서울특별시와 부산시 및 各道에 둘 수 있었던 支部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두게 했으며 本會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事業으로 産學協同에 관한 調査와 政策의 建議, 그리고 科學技術 用役을 新設 插入했다. 또한 本會의 기관으로는 평의회를 새로이 두기로 함과 동시에 以前의 운영위원장회의와 운영위원회는 폐지하기를 합의로 보았는데 따라서 운영위원회는 임원진에서 제외된다. 또, 매년 12월 중에 개최되었던 정기총회는 2월중에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면 이번에 새로이 개정된 정관의 全文을 게재하기로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연합회는 사단법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본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 (본회와 지부)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국내 과학기술단체의 유기적 결합으로 과학 기술진흥의 체계적인 계획 및 실천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의 심의 및 건의
2. 국내외 과학기술의 교류 소개 홍보 및 출판
3. 국내외 과학기술단체간의 협동과 활동의 장려 및 조정
4. 과학기술회관의 건립 및 운영
5.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제반 회합의 주최 및 주선

※6. 산학협동에 관한 조사와 정책의 건의

7. 과학기술 용역

※8. 기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본회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및 찬조회원으로 한다.

제6조 (정회원) 정회원은 본회 목적에 찬동하는 과학기술에 관한 학회 및 과학기술발전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한다.

제7조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산하단체를 가진 과학기술단체 연구소 또는 과학기술 관계기관으로 한다.

제8조 (찬조회원) 본회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본회 사업에 참여 또는 협찬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

제9조 (회원가입) 회원의 가입은 이사회의 심사를 요한다.

제3장 기 관

제10조 (기관의 종류) 본회에 다음의 기관을 둔다.

1. 총 회
2. 이사회
3. 평의회

제4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종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 장	1명
부 회 장	5 명
이 사 장	1 명
이 사	27 명
감 사	3 명
사무총장	1 명

제12조 (임원의 선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임원의 수는 각부문에 걸쳐 균형되도록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사장은 이사회 (제17조)에서 선출한다.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13조 (임원의 임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을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이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 운영에 관한 회무를 심의 결정한다.

감사는 본회의 금전출납, 결산보고 및 제반 회무를 감사한다.

사무총장은 제10조에 규정된 각 기관의 결의사항을 집행한다.

제14조 (명예회장 및 고문) 본회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명예회장 및 고문 약간인을 회장이 추천할 수 있다.

제15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5장 회 의

제16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2종으로 하며 정회원 및 특별회원인 단체를 대표하는 대의원으로서 구성한다.

정회원의 대의원수는 별표 기준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한다.

특별회원의 대의원수는 2명으로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또는 대의원수의 5분지 2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이를 개최한다.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
2.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의 심의
3. 임원의 선출
4. 정관의 정정 및 개정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

총회는 재석정회원단체수의 5분지 2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하고 참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소속 대의원 1인 이상의 출석으로 그 단체는 출석한 것으로 간주 한다.

총회는 총회개최일 7일 이전에 그 소집을 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시총회에서는 소집통고시에 통고한 이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지 못한다.

제17조 (이사회) 이사회는 재적이사 2분지 1이상의 출석으로 성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이사회는 회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8조 (평의회) 평의회는 회원단체학회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되며 학술과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9조 (기타) 각급회의의 결의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그 가부를 정한다.

제6조 재 정

제20조 (재원) 본회의경비는 회원의 회비 정부의 보조금 기부금품 찬조금 재산으로 부터 생한 과실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1조 (회비) 회비는 대의원수에 비례하여 총회에서 결정한다.

단, 과학기술회관 건립, 기타 필요에 따라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하단체 소속회원으로 부터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특별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2조 (정권) 회비를 체납할 시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정권할 수 있다.

제23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제24조 (처무규정) 본회의 처무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5조 (정관의 개정) 본회의 정관은 총회에서 출석대의원 3분지2 이상의 결의로 개정할 수 있다.

제26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시의 결의사항을 집행한다.

제27조 (재산처리) 본회가 해산하였을 시에는 임원이 청산인이 되고 감사가 청산감사인이 된다. 잔여재산이 있을 시에는 청산인회의 결의에 의하여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이를 기증한다.

제28조 (시행) 본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통과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9조 (부칙)

1. 본회는 제4조 제4호 과학기술센터회관의 건립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센터회관건립 기성회를 둔다.
2. 전항 기성회의 회원은 본회찬조회원으로 간주한다.

제30조 (시행)

본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대의원수기준표(제16조)

회원	1명이상	100명미만	1명
회원	100명이상	250명미만	2명
회원	250명이상	500명미만	3명
회원	500명이상	1,000명미만	4명
회원	1,000명이상	1,500명미만	5명
회원	1,500명이상	2,500명미만	6명
회원	2,500명이상	4,000명미만	7명
회원	4,000명이상	6,000명미만	8명
회원	6,000명이상	9,000명미만	9명
회원	9,000명이상	13,000명미만	10명
회원	13,000명이상 매5,000명에 1명씩추가		